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9480(본소), 2020다9497(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청구 · 임차보증금]

재판경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9480(본소), 2020다9497(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310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A

피고(반소원고), 상고인B

판결 선고 2020. 6. 11.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3101(본소), 2019나5152(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